

소비자가 만드는 의료서비스

# 의료사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의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 등의 말은 환자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불만사항이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는 갖가지 합병증을 앓다보면 치료받아야 할 일이 많아져 그만큼 병원 가야할 일도 잦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들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환자의 처지다.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자.



## ■ 망막수술 후 실명된 건

45세 남성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안 시력이 0.4(0.15)에서 이틀 사이 0.2(0.05)로 저하되어 종합병원에서 2003년 12월 12일 수술을(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가스주입 등)받았다. 12월 27일 안압 상승 상태에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제)을 한 달반 정도 투여하였으며, 담당의사가 사직하여 2004년 1월 17일 이후에는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1월 24일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약만 처방되었고, 1월 30일 눈이 심하게 당김을 호소하자, 가스만 빠지면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2월 11일 진료 당시 안압이 상승됨이 확인되었으며 3월 4일 대학병원에서 좌안의 이차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각장애(2급1호)로 진단 받았다. 병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 〈전문가 답변〉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치료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료과정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좌안 시력이 2일전보다 저하된 사실(0.4/0.15→ 0.2/0.05)을 볼 때, 당시 좌안의 출혈과 함께 시력저하를 유발시킨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므로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2월 27일 안압이 상승된 상태였으나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안압상승 및 녹내장이 발생됨)을 새로 처방하여 46일간 투여하였고, 환자

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한 결과 안압이 극도로 상승된 것 같다.

유리체절제술 후 대부분(70~90%) 시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좌안 상태악화에 기여한 점과 수술 후 갑자기 시력이 저하된 사실, 안압상승 및 녹내장 등 부작용이 있는 점안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상세한 설명(투약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하지 않고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다가 안압이 상승된 이후에 비로소 처방을 중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에 시각장애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종합검진에서 신부전증 조기 진단받지 못하는데 대한 보상 유무

54세 남성이 6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어 신장이식술까지 받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때까지 신장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나 신부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몸이 자주 붓고 피로함을 호소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결국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투석치료와 이식술을 받게 되었고 면역요법을 평생 동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병원 측의 진료소홀과 부주의로 치료시기를 놓쳐 신장이식술까지 받게 되었고 생명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전문가 답변〉

**고혈압약 복용 중 신장이상에 대한 검사 소홀로 신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동맥경화를 가져와 사구체(모세혈관 덩어리)여과율과 세뇨관 기능저하를 가져와서 결국 신장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데, 고혈압에 의한 사망원인의 10%는 신부전증이다.

이와 같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혈압으로 투약처치를 받고 있고, 부종 등이 있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나 요 검사 등을 하여 신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신부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장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신장의 크기 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신장내과에 협진하여 경과 관찰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하여 만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또 신장이식이 삶의 질과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일실수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